

<의안번호 제2007-13호>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6.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 6. 19.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수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연서 주민수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함(안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다. 입법예고 (2007. 4.24~5.15)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동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자치단체별 20세이상 주민수를 대상으로 하여 최소 1만5천명 미만과 최대 700만명 이상으로 계급별 20단계별로 나누어 연서주민수를 최소 370명부터 14만명으로 단계별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 2006. 1. 11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자치단체별 종전의 20세→19세 이상 주민수를 대상으로 하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 20분의 1이하(광역자치의 경우 : 1000분의 1 이상 ~ 70분의 1이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사항으로 동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검토됨.
 - 동 조례 제정이 늦은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